

---

# 1381 해외인증자료

---



무단 도용 배포 금지

## (문의)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로봇으로, 미국의 CES 등과 같은 전시회 참석할 경우 필요한 절차나 규제가 있나요?

판매를 위한 수출이 아닌 전시장에서 체험해보는 데에도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국내에서 전시할 때 허가 전에는 '전시용 의료기기'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므로 일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도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세관

무역 박람회/박람회에 제품을 전시하기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세관 통관시 필요한 권장사항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는 세관에서 규제하는 내용이며, 제품별로 적용되는 관련규제는 관할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Official documentation date and location of the Trade Show
- Confirmation that you are an exhibitor
- Documentation indicating value of items
- Mark items "Not for Sale" or mutilate the items
- Contact the Port of Entry prior to travel
- **Check with the government agency that regulates your product for any possible restrictions or required documentation**
- Obtain the HTSUS code for your items

\* 출처 CBP > Trade Shows - Exhibiting a Product

[https://help.cbp.gov/s/article/Article-1212?language=en\\_US](https://help.cbp.gov/s/article/Article-1212?language=en_US)

제품의 가치가 \$2500 이상일 경우, 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TIB)이나 Carne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시 목적이나 방문 일정에만 가지고 들어와 이후에 다시 가져가는 제품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관 및 관세에 관한 사안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BP > 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TIB)

<https://www.cbp.gov/trade/programs-administration/entry-summary-and-post-release-processes/temporary-importation-under-bond>

- ATA Carnet

<https://uscib.org/ata-carnet-export-service-ud-718/>

###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전자파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강제인증사항은 FCC의 전자파관련 규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FCC의 경우 무역박람회(trade show)에 전시 목적상 제한된 수량으로 수입되는 무선제품(radio frequency device)에 대해 미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조건으로 전자파 규제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한된 수량(limited quantities)은 400개 이하를 의미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수량의 경우 수입 전에 FCC로부터 서면승인(written approval)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최종수취인(The ultimate consignee)은 해당 수입조건의 적합성과 그 근거에 대해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 2.1204 Import conditions.**

(a) Radio frequency devices may be imported only if one or more of these conditions are met:

.  
. .

(4) The radio frequency device is being imported in limited quantities for demonstration at industry trade shows and the device will not be offered for sale or marketed. The phrase “limited quantities,” in this context means:

(i) 400 or fewer devices.

(ii) Prior to importation of a greater number of units than shown above, written approval must be obtained from the Chief,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FCC.

(iii) Distinctly different models of a product and separate generations of a particular model under development are considered to be separate devices.

(iv) Distinctly different models of a product and separate generations of a particular model under development are considered to be separate devices.

(b) The ultimate consignee must be able to document compliance with the selected import condition and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import condition applied.

\* 출처 47 CFR § 2.1204 - Import conditions. **2.1204(a)(4)항목 확인**

<https://www.ecfr.gov/current/title-47/chapter-I/subchapter-A/part-2/subpart-K/section-2.1204>

**# 수량 제한 초과 요청**

제한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할 경우 수입 전에 FCC에 이를 허가받아야 하며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량제한 초과 신청 절차는 “741304 D01 Request to Exceed Importation Limits v02” 가이드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

- The KDB Inquiry System

<http://www.fcc.gov/labhelp>

\* 수량 제한 초과 요청(Request to Exceed Importation Limits) 가이드스 다운로드 링크

- 741304 D01 Request to Exceed Importation Limits v02

<https://apps.fcc.gov/oetcf/kdb/forms/FTSSearchResultPage.cfm?switch=P&id=57012>

\* 참고

- FCC > Equipment Authorization - Importation

<https://www.fcc.gov/oet/ea/importation#sec10>

8. How do I obtain a waiver of the quantity limitations as specified in the importation conditions: testing and evaluation or demonstration at industry trade shows, conditions 3 and 4 respectively (see FAQ 1)? 항목 확인

## 유의 사항

### ▶ 유의사항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 강제인증보다는 각 주별 규제 및 민간 인증이 통용되는 형태로 사전인증제도보다는 리콜/처벌 등의 엄격한 사후 관리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보증할 책임은 제조자/수입업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시 세관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사후에 문제 발생 시 매우 엄격한 민/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 주별규제

또한 미국은 50개 주(州)로 이루어진 국가로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고 있으며 주별로 각종 민간기관의 실험·연구 등으로 기준화 및 규격화된 규격을 채택하여 강제하거나 주별 규제를 따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민간/자율인증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강제인증과 같이 통용될 수 있으며 해당품목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내 강제처럼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마다 규제여부 및 내용이 상이하므로 주별 규제 및 임의인증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지 바이어/수입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요구되는 인증이나 규제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가차원의 규제에 대해서만 대응이 가능하며, 주별 규제는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의 업무 대응 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는 환경규제인 The Proposition 65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특정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경고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예) OEHHA > Proposition 65

<https://oehha.ca.gov/proposition-65>

OEHHA > The Proposition 65 List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TUV SUD > California Proposition 65 > 캘리포니아 법령 65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https://www.tuv-sud.kr/kr-kr/activity/testing-product-certification/california-proposition-65>

### ▶ 임의인증

강제 인증이 없어도 민간단체에 의한 임의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요구사항, 규제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용도의 여타 강제 인증과는 달리 민간 임의인증은 임의, 자율인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 자체적으로 제품을 증명하는 품질인증이므로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는 규격을 선택하여 시험하신 후 DoC를 발행하시거나 해당 규격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을 경우 시험 후 해당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DoC는 말 그대로 업체 본인이 선언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온라인상에 게재된 DoC form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단, 위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미국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관련인증기관,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기관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동향이나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바이어/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북미지역본부: <http://www.kotra.or.kr/KBC/northamerica/KTMIUI010M.html>  
뉴욕무역관(미국) / 달라스무역관(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미국) / 마이애미무역관(미국) / 시카고무역관(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미국) / 워싱턴무역관(미국)

또한 KOTRA 홈페이지의 문의/상담 메뉴를 통해 상세 내용에 대해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 방법: KOTRA 홈페이지(회원 가입 필요) ⇒ '문의·상담' 메뉴 ⇒ 전화, 챗봇, 온라인 상담 선택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무역애로상담 1566-5114 [http://tradesos.kita.net/trade\\_sos/tradesos.jsp](http://tradesos.kita.net/trade_sos/tradesos.jsp)

### ※ 업무대행기관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fi/info/concList.do?key=9093>

## 지원 사업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의 각종 해외인증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 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93289](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93289)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 :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ktrInfo.do?key=9093>

- 사업명: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 지원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규모: 240개사 내외

-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인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패스트트랙 인증)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 국제IECEE, 일본PSE, 유럽CPNP  
(일반트랙 인증) 유럽 CE(의료기기 등 패스트트랙 이외에), 중국 NMPA, 미국 FDA 등

\* 트랙별 지원인증 및 개별한도금액은 첨부된 공고문의 붙임1 ~4 참고

- 모집기간 : 8월 1일(화) ~ 8월 31일(목) 18시 까지

-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각 시도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있으니 해당지역의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마당 비즈인포 > [경기] 수원시 2024년 중소기업 무관세권역 수출개척단(체코·네덜란드)지원 참가 희망 중소기업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93257](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93257)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전남] 2024년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시장개척 수출상담 참가기업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93337](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93337)

###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 해외조달정보센터

<https://www.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 해외조달정보센터 > 해외입찰정보

<https://www.globalkoreamarket.go.kr:8843/bbs/selectBoardList.do?boardId=GPASS004>

※ 주 의!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페이지의 일부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 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기간, 가격 등의 상세 실무정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컨택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